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19나51330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87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19나51330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탈퇴) A 주식회사

원고승계참가인 G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5. 25.

판결선고 2021. 7. 6.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8가단52398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17. 6. 19. 체결한 증여계약을 36,824,581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36,824,5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갑 제7, 8호증을 사실인정의 증거로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20행과 21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과 ‘2. 원고의 주장’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원고는 2021. 1. 2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행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C에 대하여 대출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양수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

1)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808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증거에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은평구청에 대한 제출명령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E은행에 대하여 30,087,18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대출금 채무와 주식회사 F에 대한 원금 100,487,000원의 근저당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C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C은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사해행위의 취소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의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의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43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와 C 지분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18,8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피고가 원금 100,487,000원, 이자 132,973원, 중도해약금 229,127원을 변제하고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2019. 5. 30. 당시 시가는 210,7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5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시가감정축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한편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위 2019. 5. 30. 당시의 시가와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증여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일 무렵의 시가인 210,700,000원에서 당시 근저당권채무액인 100,619,973원(= 원금 100,487,000원 + 이자 132,973원)을 공제한 나머지 110,080,027원(= 210,700,000원 - 100,619,973원) 중 C의 지분인 55,040,014원(= 110,080,027원 × 1/2)이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C 지분의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액은 55,040,014원이고, 한편 원고가 구하는 피보전채권액은 36,824,581원이므로, 이 사건 증여는 위 각 금액 중 작은 금액인 36,824,581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가액배상으로 36,824,58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고승계참가인이 당심에서 승계참가하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진원, 판사 이상률, 판사 윤동연

별지

부동산의 표시	
1동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명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구	호 월근콘크리트조
면	적 제2층 호 63.61 평방미터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 136.5평방미터
2.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 159.7평방미터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1. 대지권의 비율 5460 분의 626	
2. 대지권의 비율 15970 분의 1830	

